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혁신을 이끄는 연구, 보안으로 지키다

등급분류 방법

등급분류 절차

등급분류 기준

등급별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Contents

Chapter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1
Chapter	II	가이드 개요	5
Chapter	III	보안등급 분류 제도	9
		1. 분류 개요	11
		2. 분류 기준	12
Chapter	IV	보안등급 분류 절차 및 방법(예시)	15
		1. 분류 원칙	17
		2. 분류 절차	18
		3. 분류 방법(예시)	21
		4. 서식을 활용한 등급분류 과정 예시	29
		[붙임 1] Q&A	40
		[붙임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서(연구자용)	43
		[붙임 3] IRIS 시스템 보안등급 관리 기능 안내	44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Chapter

I

•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2026.8.20.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그 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책임자 지정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과의 접촉 및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조치
 4.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의 관리조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마련·시행 실태 및 제8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업무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수행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조치명령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⑪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안과제·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제9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민감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2. 기술적·재산적 가치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유출 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공모를 실시하기 전까지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기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여부를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거나 제6항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의 세부절차 및 그 밖에 그 분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그 명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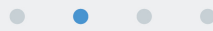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Chapter

II



가이드 개요





배경 및 목적

-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연구성과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체계의 중요성 증대
 - 주요국은 연구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출 시 위험에 따라 관리를 차등화하는 위험기반(Risk-based) 연구보안 체계로 전환하는 추세
-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민감과제·일반과제'로 구분하는 보안등급 체계를 도입하고, 등급별 보안관리 조치를 차등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
 - 다만, 새롭게 신설된 민감과제에 대한 현장 이해와 적용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과제 식별·관리 과정에서 혼선 발생 가능성 존재
- 본 가이드라인은 보안·민감과제의 분류기준·절차 등을 제시하여 연구보안 등급분류 제도의 현장 적용을 지원



[그림 1] 보안등급 세분화 개요

참고 민감과제 제도 도입 및 적용 개요

- (도입근거)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23.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26.2.19), 법 시행(26.8.20)
- (적용시점) 법 시행(26.8.20) 후 신규 공모를 추진하는 과제 및 진행 중인 과제*
 - * 해당 시점에 수행 중인 일반과제를 민감과제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계평가 등 시기에 다시 분류 가능
- (적용범위) 혁신법을 적용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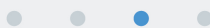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Chapter

III



보안등급 분류 제도



1

분류 개요

▶ 등급분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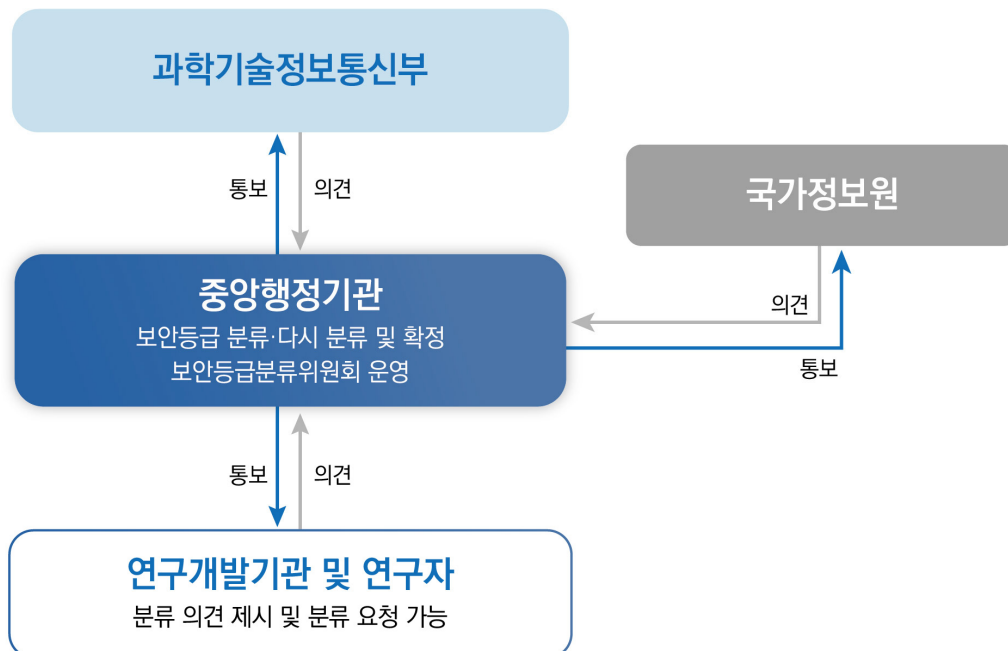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등급분류 주체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필요 시 다시 분류

▶ 주체별 역할

- **(중앙행정기관)** 보안등급 분류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 **(연구개발기관·연구자)** 수행 예정 또는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견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시 가능(붙임2 자가점검서 양식 참고)



[그림 2] 분류주체별 역할

2

분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026.2.19.)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6.8.20. 시행)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제5항 및 영제45조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보안·민감과제의 정의·분류기준

1 보안과제

- (정의)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법제21조제4항)

①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무기체계의 획득·신규개발·성능개량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로서, 국가안보상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가 필요한 경우

※ 관계법령: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②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수출통제·공급 중단 등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기술과 관련하여 국산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경제안보·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이 선제적 보호·육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이며, 유출 시 국가안보 또는 국가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시: 국가전략기술·핵심전략기술 등을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유출 시 국가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핵심기술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⑤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따라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물질·시설·장비·부품),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관계법령: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국제공동연구 등 추진 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 가능

⑥ '부처 특성에 따른 재량 판단 사항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중요성, 유출 시 국가영향을 고려할 때 보안과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민감과제

- **(정의)**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법제21조제5항)

① 국가안보·외교 등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가 국가안보·외교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참고 민감과제 검토 필요 사항 예시

- (외교적 전략성) 특정 국가기관과 협력 시 국가전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내기술 해외 이전 시 국가경쟁력 또는 전략적 자율성 악화 우려 존재 등 검토
- (법적 통제 기술 연계성)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전략물자, 국가핵심기술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또는 밀접한 연계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 (성과활용처) 연구개발성과가 활용처·수요자 등에 따라 군사안보 분야에 전용될 가능성
- (기타 경제안보) 희소자원 확보, 공급망 안전성 유지 등을 위한 상시 관리 필요

②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보호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자체의 중요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출 시 국가경쟁력 또는 국가이익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참고 민감과제 검토 필요 사항 예시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분야와 연계되며, 기술성숙도(TRL) 4 이상 혹은 연구개발단계 '응용' 이상으로 보호 필요
- 연구개발성과가 미래 시장 선점효과 또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직결되는지 검토

③ 그 밖에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수행 환경, 국제협력 방식, 연구개발성과·산출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참고 민감과제 검토 필요 사항 예시

- 해외 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민감한 정보 및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가 간 MOU에 따른 기술이전 시, 상호 계약 이행을 위해 추가적 보안관리
- 연구장비 반출, 데이터, 시료 관리 등 전반에서 국가안보 또는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3 일반과제

-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연구관리 및 기본 보안관리 조치 하에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연구보안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Chapter

IV

...

보안등급 분류 절차 및 방법[예시]





분류 원칙

1 국가 차원의 보호 필요성에 비례한 종합적 판단

- 보안등급 분류는 '참여자·특정주제·기술수준' 등 단일 요건이 아닌 연구성과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가안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안과제를 최우선 식별·분류하되 그 외 중앙행정기관의 기술보호·육성 지정 법령 준수

2 협력적·전문적 의사결정

- 보안등급 분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적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
 - 보안등급분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투명성·객관성·책임성 확보
 - 전문 기술판정 필요 시 관계 기관에 문의
 - ※ 예시: 전략물자(무역안보관리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방위사업청),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전략기술(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안보센터)
 - 연구개발기관이 보안등급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현장 전문성 반영(붙임2 자가점검서 양식 참고)
 -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책임 기반의 보안관리 체계 구축

3 예측 가능성 및 절차적 안정성 원칙

- R&D 기획·공고·협약단계에서 보안등급을 분류하거나 안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상황에 따라 전 주기상 보안등급 지정·변경 추진
- 대외환경 변화 또는 연구 성격·활용계획 변경 등으로 보안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간 사전 협의를 거쳐 다시 분류 여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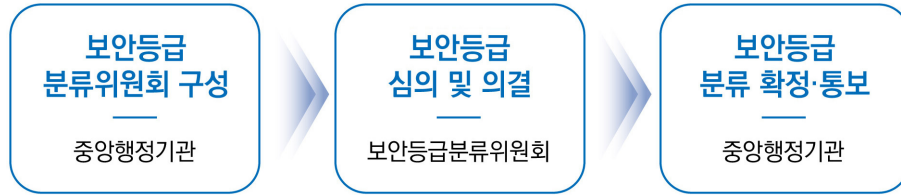
4 과제 단위 분류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목표·성과활용 계획)을 고려한 과제 단위 분류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과제를 기준으로 일괄 지정하기보다, 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 범위와 성과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
 - 국가 전략적 중요도가 높거나 보안 민감성이 큰 사업군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 단위 보안등급 분류도 검토 가능

2

분류 절차

▶ 기본 절차



[그림 3] 보안등급 분류를 위한 기본절차 흐름

① 보안등급분류위원회 구성

-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등)은 보안등급 분류·다시 분류를 위한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추진 단계상 보안등급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존재 시 보안등급분류위원회 역할도 함께 수행 가능

참고 보안등급분류위원회 운영기준 예시

- (위원회 역할) 보안등급분류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 및 다시 분류에 관한 심의·의결
- (위원 구성요건)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포함
- (위원 선정방식) 위원은 공모 또는 위촉 방식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 (운영체계) 중앙행정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지정된 연구보안 총괄·수행부서는 보안등급분류위원회의 구성·운영 체계를 총괄
 - 협약·평가 등 특정 시기에 비상설 형태로 운영하거나, 보안등급 분류 수요 및 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상설 형태로 운영 등 고려
- (운영방식) 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 및 다시 분류에 관한 심의·의결의 주요 판단 근거를 기록·관리 하고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별도 보안관리(관련 문서 암호화, 시스템 보안 등) 조치 실시
- (의결방식)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표 1> 보안등급분류위원회(예시)

단계	상세 내용	
등급 분류 시	보안등급분류 위원회	· 등급분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보안등급 분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을 권고
기획/ 공모	사전기획위원회	·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기획 과정에서 연구목적, 달성목표 및 예상성과 등을 검토하여 보안등급을 심의·의결
선정/ 협약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의 목적·내용, 예상 산출물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안등급을 심의·의결
단계/ 종료 평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 연구개발성과, 성과 활용계획 및 수요자 등을 검토하여 기존 보안등급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 변경 여부를 심의·의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	·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절차에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 해당 심의결과와 연계하여 보안등급을 심의·의결

② 보안등급 심의·의결 (3. 분류방법 참고)

- 보안등급분류위원회는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 필요 수준을 심의
- 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개별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보안과제, 민감과제, 일반과제 중 하나로 의결

③ 보안등급 분류 확정·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보안등급분류위원회의 보안등급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보안등급을 확정
- 중앙행정기관은 보안등급을 확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에 통보
 ※ 통보 방법 및 IRIS 입력 화면은 붙임3 참고, 통보 기한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이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수립한 보안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

<표 2> 보안등급 분류결과 통보 내용

구분	상세 내용
1. 통보내용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분류하거나 다시 분류한 사유
2. 통보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에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통보 ※ 통보 방법은 기관별 여건에 따르며, IRIS를 이용하는 기관은 IRIS의 협약변경 절차를 통해 통보 (붙임3 참고)
3. 통보시기	·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거나 다시 분류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한 시점 * 예시: 연구개발기관 선정, 보안등급 다시 분류 완료 시 등 · 다만, 보안등급 확정 당시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통보

▶ 분류 시기별 보안등급 분류 절차



[그림 4] 보안등급 분류 시기

① (사전기획~협약 단계) 과제 공모 전 또는 협약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영제45조제3항·제4항)

- (기획·공모) 중앙행정기관은 과제 기획 시, 연구개발기관 공모 전 '보안·민감과제' 분류
- (협약) 공모 시 보안등급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협약 전까지 '보안등급' 지정
 - 영제45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로서 ①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②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영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선정 즉시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
 - 영제10조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 가능
 - 연구개발기관은 수행 예정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분류 의견 제시 가능

② (연구수행~종료) 대외 환경 변화나 연구 활용방향의 조정 등으로 연구자산 보호 필요성이 변경된 경우 영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기준으로, 보안등급 다시 분류 검토(영제45조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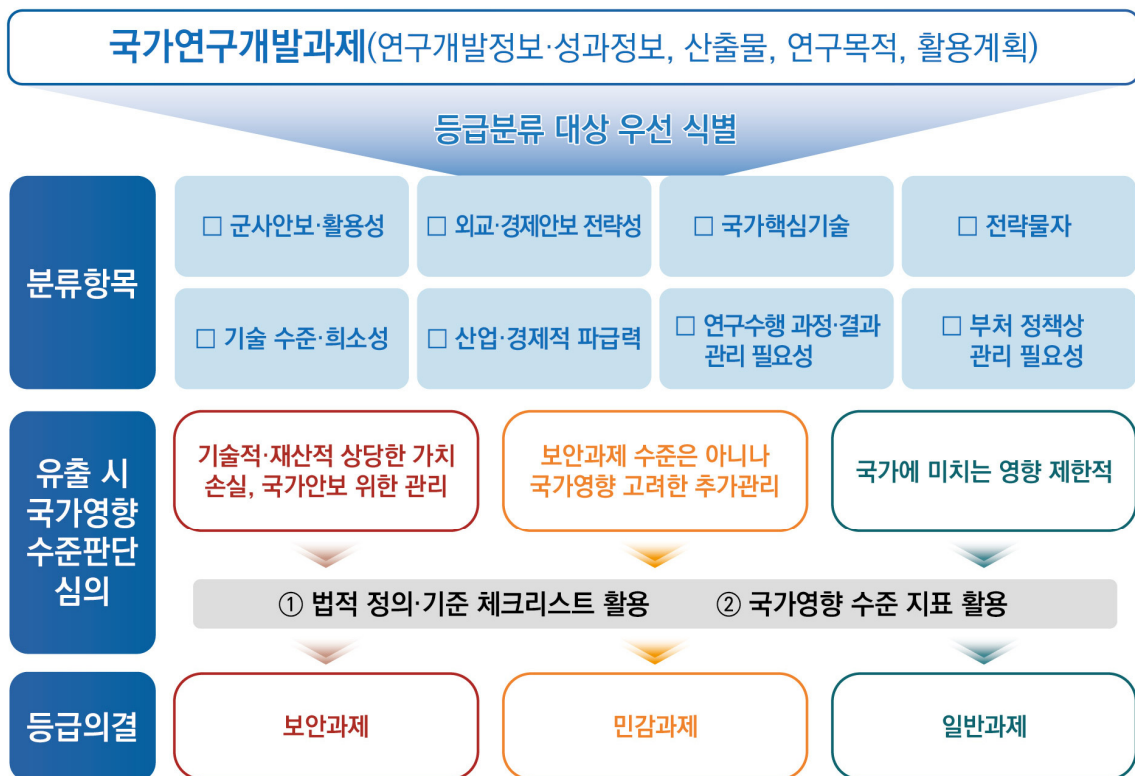
- (연구수행 중)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보안등급분류 위원회를 통해 다시 분류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 또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 등급에 대한 다시 분류 의견 제시 가능
 - 보안등급 변경은 '중요한 협약변경'에 해당하므로 협약당사자는 혁신법에 따른 변경 절차 추진하며 등급 변경에 따른 제반 보안관리 필요 사항 논의
 - (평가·종료)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보안등급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등급 변경 가능
 - 보안등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범위, 활용 제한 및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검토
 - 보안 및 민감과제 지정의 유지 기간과 해제 필요성 판단
- ※ 참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대외 환경이나 관련 기술의 중요도 등이 변화한 경우, 보안등급을 재검토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예시: 국가핵심기술 해제·지정으로 보안등급 상·하향 조정)

3

분류 방법(예시)

▶ 개요

- 보안등급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상 보안·민감과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연구개발과제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심의·의결
 - **(등급분류 대상 식별)** 필요시 법령상 보호기술, 국제공동연구, 대형사업 등 등급분류 대상 우선 식별 후 심의
 - ※ 연구개발과제 관련 문서(RFP·계획서·보고서)의 연구목표, 창출 연구개발성과·산출물, 활용계획 등 검토
 - **(분류기준 검토)** 심의대상 과제가 '보안·민감과제 법적 분류기준(영제45조제1항·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 **(유출 시 국가영향 검토)** ① 법적 정의·기준에 대한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또는 ② 국가영향 수준 지표를 활용
 - ※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거나 하나의 방법 선택 가능
 - **(등급의결)** 연구개발과제별 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



[그림 5] 보안등급 분류 방법 개요

▶ 보안등급분류 서식 활용 방법(예시)

분류 방법에서 제시하는 <표3>, <표4>, <표5> 서식들은 법령에 따른 의무 절차가 아니며, 보안등급 분류 업무의 편의를 돕고 법령상 검토 사항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서식임

※ '중앙행정기관별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및 '국가영향 수준 검토방식'에 따라 본 양식을 변경하여 활용 가능

① 법적 정의 및 분류 기준 체크리스트 활용(표3)

※ 활용 상황: 법령상 보안·민감과제 분류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검토항목의 국가영향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방식 활용 권고

- 연구개발과제 분야, 연구단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제에 적합한 혁신법상 검토항목(영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류기준)을 선택

- 선택한 검토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유출 시 예상되는 영향을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의 보안·민감과제 정의에 비추어 다음 절차에 따라 보안등급을 심의·의결

- 보안과제: 외부 유출 시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 별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로 의결
- 민감과제: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은 과제 중 전략적 필요성, 기술적·재산적 가치, 유출 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민감과제로 의결
- 일반과제: 위 검토 결과 보안과제와 민감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제로 의결

※ 체크된 항목의 개수만으로 보안등급을 결정하지 않으며, 해당 항목에서 확인되는 유출 영향과 보호 필요 수준을 바탕으로 판단. 하나의 항목만으로도 보안과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여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안·민감과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

- 관련 기술의 판정결과나 관계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검토 결과 등을 통해 분류기준 해당 여부와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보호 필요 수준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보안등급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예: 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판정 결과가 존재하거나, 관계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보안 및 민감 등급 분류를 위한 검토 완결

※ 예: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 유출 시 피해 수준이 '국가에 상당한 기술적·재산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로 판단되면 보안과제로, '국가영향 수준 고려해 추가적 관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감과제로 의결 가능

<표 3> 법적 정의 및 분류 기준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보안등급 분류 기준 상세 내용	해당	근거 법령
1. 군사·안보 활용성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직접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 수행 과정에서 기술의 활용 방식, 연구 적용 맥락 등에 따라 민간 목적 외 국가안보·방위 분야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보안] 영제45조제1항1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1호
2. 외교·경제안보 관련성	· 외국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공급망 안정성, 필수자원 확보, 국제협력·통상 환경 등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내용	☐	☐ [보안] 영제45조제1항2호가 또는 영제45조제1항3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1호
3.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검토 필요 · 기존 법령상 보호대상 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국가영향을 고려하여 검토 가능	☐	☐ [보안] 영제45조제1항2호다 또는 영제45조제1항3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1호
4. 전략물자	·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이중용도 품목, 군용물자품목 등 ※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필수 검토	☐	☐ [보안] 영제45조제1항2호라 또는 영제45조제1항3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1호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	·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거나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재현·대체하기 어려운 희소한 원천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 영제45조제1항2호나 또는 영제45조제1항3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2호
6. 산업·경제적 파급력	· 미래 신산업 또는 국가 주력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산업 생태계·시장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기술자립·글로벌 특허·국제표준 선점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 영제45조제1항2호나 또는 영제45조제1항3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2호
7. 연구수행 과정·결과 관리 필요성	· 연구수행 환경, 국제협력 방식, 연구개발성과·산출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보안] 영제45조제1항3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3호
8. 부처 정책상 관리 필요성	· 중앙행정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보호 또는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보안] 영제45조제1항3호 ☐ [민감] 영제45조제2항3호

- [참고] 상기 보안등급 법적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의 정의에 부합해야 각 보안등급으로 지정 가능
- [보안과제 정의 : 법제21조제4항] - 유출 시 기술적·재산적 가치 상당한 손실 예상, 국가안보를 위한 보안관리가 필요
 - [민감과제 정의 : 법제21조제5항] - 보안과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가영향 고려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수준

② 국가영향 수준 지표 활용(표4, 표5)

※ 활용 상황: 법적 정의·기준 체크리스트만으로 보안등급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활용 권고

- 소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검토항목을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에서 선택
 - 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안등급 분류대상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할 검토항목을 공통으로 선정
 -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특정 검토항목의 중요도를 보다 크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 검토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 차등 부여 가능
- 위원별 검토항목에 대한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을 판단한 뒤 이를 위원회 평균점수 등으로 정비하여 보안등급 심의
 - 모든 위원이 동일한 검토항목(가중치 존재 시 동일 적용)을 검토하되, 각 검토항목에 대한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은 검토위원 개별적으로 판단·기재
 - 위원 판단 국가영향 수준 점수를 종합하여 위원회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보안등급 심의 시 참고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 참고 척도 예시]

- 연구개발과제 유출 시 발생 가능한 국가영향 수준은 보안·민감과제의 정의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며, 판단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 5점(상당한 국가영향) : 국가 안보, 외교, 산업 등에 상당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수준
- 4점(높은 국가영향) : 보안과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나 국가 안보·외교·산업 등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나 민감한 영향을 미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수준
- 3점(제한적 국가영향) : 국가 안보, 외교, 산업 등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 손실은 제한적
- 2점(경미한 영향) : 국가 안보, 외교,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수준
- 1점(영향 미미) : 공개·확산 시 국가 안보, 외교, 산업 등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

[검토항목별 가중치 예시]

-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방법에 제시된 '검토항목'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특성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해 관련성이 높은 '검토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검토항목별 가중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보안등급분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0.8~1.2 범위에서 부여하되 전체 가중치 합이 평균이 1.0이 되도록 설정
 -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검토항목의 가중치를 1.0으로 설정
- ※ (산출식) 국가영향 수준 점수 = (검토항목별 가중치 × 영향수준 점수)의 합 ÷ 적용 검토항목 수

<위원별 국가영향 수준 지표 계산 예시>

- 검토항목 4개 선택(가중치 적용): 3.국가핵심기술(1.2), 5.기술 수준 및 희소성(1.1), 6.산업·경제적 파급력(0.9), 7.연구수행 과정·결과관리 필요성(0.8) 부여(가중치 평균 1.0 = $(1.2+1.1+0.9+0.8) \div 4$)
- 국가영향 수준 판단: 위원 판단 영향수준이 각각 5점·4점·3점·3점인 경우, $(1.2 \times 5 + 1.1 \times 4 + 0.9 \times 3 + 0.8 \times 3) \div 4 = 3.88$ 점

[보안등급 판정 가이드 예시]

- 위원회 평균 4.5점 이상 : 보안과제 지정 필요성 우선 검토
- 위원회 평균 3.5점 이상~4.5점 미만 : 민감과제 지정 필요성 우선 검토
- 위원회 평균 3.5점 미만 : 일반과제 우선 검토

<표 4> 국가영향 수준 지표 활용 서식

과제기본 정보					
세부사업명					
과제명					
검토항목	보안등급 분류 기준 상세 내용	검토정보 예시	검토항목 해당 (A)	검토항목 가중치 (B)	검토항목 영향 수준 (C)
1. 군사·안보 활용성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직접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 연구 수행 과정에서 기술의 활용 방식, 연구 적용 맥락 등에 따라 민간 목적 외 국가안보·방위 분야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발 기술의 향후 활용처, 개발 목적이 무기체계와 연계되는 정도, 활용대상자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2. 외교·경제안보 관련성	- 외국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공급망 안정성, 필수자원 확보, 국제협력·통상 환경 등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내용	기술 자립 목표 및 수입 의존율 등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3. 국가핵심 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검토 필요 - 기존 법령상 보호대상 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향후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국가영향을 고려하여 검토 가능	관련 기술 판정결과 및 지정 여부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4. 전략물자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필수 검토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거나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재현·대체하기 어려운 희소한 원천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기술수준 평가, 경쟁국 기술격차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검토항목	보안등급 분류 기준 상세 내용	검토정보 예시	검토항목 해당 (A)	검토항목 가중치 (B)	검토항목 영향 수준 (C)
6. 산업·경제적 파급력	· 미래 신산업 또는 국가 주력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산업 생태계·시장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기술자립·글로벌 특허·국제표준 선점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시장가치, 투자규모, 대체기술 개발 소요기간 및 비용 연관 산업 수, 후속 상용화 가능성, 특허·표준화 연계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7. 연구수행 과정·결과 관리 필요성	· 연구수행 환경, 국제협력 방식, 연구 개발성과·산출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정보의 유형 (설계·공정·원천기술 등), 취급 인원 범위, 국제공동 여부, 결과물 비공개·제한 공개 필요 여부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8. (기타) 부처 정책상 관리 필요성	· 중앙행정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보호 또는 추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	()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검토위원 국가영향 수준 점수(가중치 반영)				*	**

※ 검토항목 해당 여부(A) 및 가중치(B)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통으로 설정

* 검토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0.8~1.2 범위에서 차등 부여하되 전체 가중치 합이 1.0이 되도록 설정,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적용 검토항목의 가중치를 1.0으로 설정

** (산출식) 국가영향 수준 점수 = (검토항목별 가중치(B) × 영향수준 점수(C))의 합 ÷ 적용 검토항목(A) 수

위원별 보안등급 선택		
보안과제	☐	국가안보 위한 별도 관리 필요 → 강력한 통제 및 비공개 관리
민감과제	☐	국가전략에 잠재적 영향 줄 수 있어 추가 관리 필요 → 기관·연구자 단위 관리하되 개방 가능
일반과제	☐	유출 시 국가안보 및 전략 등 영향 제한적 → 성과공개·확산원칙
종합 의견 서술		
등급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예: 첨단전략기술에 근접한 사양으로 판단되어 민감과제 의견 제시)		
위원회 종합 토론 시 중점 논의가 필요한 사항(예: 외국 기관 참여의 실질적 정보 접근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집중 토론 요망, 법적기준 또는 국가영향지표 결과와 위원이 생각하는 결과가 상이함)		
제출확인		
제출일시	2026 년 월 일	
검토위원 서명	(서명)	
간사 확인	(서명)	

<표 5> 보안등급 분류를 위한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 지표 예시

검토항목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 참고 척도 상세 예시 ※ 중앙행정기관별 수행 연구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				
	⑤ 상당한 국가영향	④ 높은 국가영향	③ 제한적 국가영향	② 경미한 영향	① 영향 미미
1. 군사·안보 활용성	무기체계·군사작전에 즉시 활용되어 국가안보에 직접 위협	무기체계 또는 국가중요시설·방위산업에 활용되어 국가안보에 손실	이중용도 기술이나 기술적 한계·범위로 인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제한적	군사적 영향이 기술 특성상 일부에 그치는 수준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음
2. 외교·경제안보 관련성	외교·경제안보 전략, 국제협력, 공급망 안정성 또는 핵심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	외교·경제안보 전략, 국제협력, 공급망 안정성 또는 핵심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파급효과	외교·경제안보 전략, 국제협력, 공급망 안정성 또는 핵심산업 경쟁력에 일부 영향, 직접적인 손실은 제한적	외교·경제안보 전략, 국제협력, 공급망 안정성 또는 핵심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	외교·경제안보 전략, 국제협력, 공급망 안정성 또는 핵심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3. 국가핵심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되며, 유출 시에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피해 초래 가능	국가핵심기술의 수준에 근접하며 유출 시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손실 가능	국가핵심기술과 격차가 있으나, 해당 기술과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어 일정 수준 관리 필요	국가핵심기술과 유사 기술 분야이나 기술적 격차가 상당하여 유출 시 국가경쟁력 저해 우려가 경미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유출 시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
4. 전략물자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검토 권고	전략물자 기술로 선정되며 무단 해외 이전 시 국가 안보 및 외교 관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수준	전략물자에 근접한 수준이거나 '이중용도 품목' 등으로 '민감 지역·기관' 이전 시 안보외교적 파급효과 발생 가능	국제 통제 동향이나 기술 트렌드상 향후 전략물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수준	전략물자 연관분야에 속하나, 범용 기술이거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안보적 위험성이 제한적인 수준	일반 상용 품목·기술로,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통제 측면의 영향이 미미한 수준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	세계 최고 수준·전략적 희소성이 있는 기술로 유출 시 국가우위에 막대한 피해	세계 선도그룹 수준 기술로 유출 시에 국제 경쟁력에 직접 손실	추격·발전 단계의 기술로 유사·대체 기술이 있어 유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	유사·대체 기술이 많아 영향이 경미	보편화된 기술 수준으로, 유출되더라도 국가간 기술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
6. 산업·경제적 파급력	국가 주력·전략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시장 구조 전반에 심각한 타격 및 지각변동을 초래	국가 주력산업 및 미래 신산업의 핵심 성장 기반·원천기술 확보 등 경쟁력에 직접적 손실	파급효과가 일부 선행도기업에 영향을 주며 국가 경제 전반으로의 직접적인 손실은 제한적인 수준	파급효과가 개별 기업의 경영상 타격 수준에 그치며, 국가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손실은 경미한 수준	공개·확산되더라도 국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손실이 거의 없는 수준
7. 연구수행 과정·결과 관리 필요성	국가 간 협정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거나, 연구성과·산출물(시료·데이터 등)의 이전·유출·악용 시 국가안보에 중대 피해	국제공동연구 또는 연구성과·산출물에 국가안보·외교·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 차원 별도 관리 필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연구성과·산출물의 공유·이전 과정에서 기술·정보의 유출·악용위험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예방 관리 필요	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 또는 연구성과·산출물에 일정한 관리 필요성이 있으나, 공유·이전 범위가 제한적이며 일반적인 관리체계로 충분히 관리 가능	학술·인력교류, 공동세미나 등 일반적인 국제협력에 해당하거나 연구성과·산출물의 공개·공유가 통상적으로 허용되어 국가안보·외교·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

등급분류 우선 검토 대상 식별 및 검토 내용 예시

- **(후보군 식별)** 보안등급분류위원회(대체위원회 포함)는 필요시, 보안등급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식별 (아래 기준 단일 또는 복합 적용)
- 세부사업 단위로 보안등급 분류대상을 식별한 경우에도, IRIS 등을 통한 과제관리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수행

선별 대상	검토단위	상세 내용
혁신법 및 타 법령상 보호 대상 기술 포함 연구개발과제 (국가영향 수준 지표 참고)	개별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전략기술 육성특별법 제11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 제11조,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 등 입법 근거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검토
연구개발과제 관련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별과제	· 연구목적, 연구수행 내용,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정보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의 공개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안등급 분류 필요성 검토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과제	개별과제	· 국제공동연구 시, 수출통제 기술 및 국가 중요 연구자산 포함 연구에 대한 검토 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목표 및 기술사양을 지향하는 연구개발과제	개별과제	· RFP 또는 연구보고서상 기술의 성능목표·사양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세계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경우, 연구성과의 국가적 활용 가능성과 경제적 가치가 높을 수 있으므로 보안등급 분류 필요성 검토
총사업비 1,000억 혹은 국고 500억 원 이상 대형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세부사업· 개별과제	· 대형연구개발사업은 대규모 연구비와 핵심 연구인력이 투입되어 국가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연구성과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기간이 장기인 경우 체계적인 유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어 핵심과제의 보안등급 지정 검토
중앙행정기관 재량	세부사업· 개별과제	· 국무회의, 범부처 합동정책, 부처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정책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육성·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적 중요성이 높아 추가적인 보호 필요성 검토 가능

- TRL 단계가 낮은 기초 분야 과제(TRL 1~3단계)도 보안·민감과제로 지정할 수 있으나, 기술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기술성숙도가 높은 단계(TRL 4단계 이상)부터 우선 검토 필요

- **(검토 내용)** 보안등급분류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문서(RFP·계획서·보고서)의 연구목표, 예상 또는 창출 연구개발성과·산출물, 활용계획 등을 토대로 보안등급 검토

구분	검토 항목 상세 예시
1. 연구개발과제 목표	연구목적, 개발대상 기술, 달성 목표
2. 연구개발성과·산출물	연구성과, 기술, 공정정보, 설계도면, 소스코드, 시제품, 취급정보
3. 연구개발성과 활용 방안	수요기관, 성과물의 활용용도 등

4

서식을 활용한 등급분류 과정 예시

▶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활용 예시

※ 이하의 사업명, 과제명 및 과제정보는 예시를 위해 AI를 활용하여 임의로 생성한 자료임
 ※ 아래 사항은 예시이며, 전문기관 등의 여건 및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심의 내용과 의결 방법을 달리 적용 가능

참고 예시 작성 의도

-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보안등급 판정 절차 예시
- 보안등급분류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소개

1 회의 개요

구분	상세 내용
회의제목	· 000 출연연구소 주요 사업『차세대 통신 핵심기술 개발사업』 관련 보안등급분류위원회
일시/장소	· 2026.00.00 / 000
회의참석자	· 허00 (총괄 기획위원장), 윤00 (분과장1), 홍00 (분과장2) 정00 (담당간사)
회의진행 순서	· 보안등급 분류 우선 심의 대상 연구개발과제 식별 · 보안등급 분류 기준 “검토항목” 선택 ·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 위원회 의견 취합 및 토의

2 심의 내용

① 보안등급 분류 우선 심의 대상 연구개발과제 식별

- 『차세대 통신 핵심기술 개발사업』 중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심의하기로 결정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보안등급 검토 사유
1	해외 통신기업과의 공동연구 기반 6G 통신망 최적화 기술 개발	국내 6G 네트워크 기술의 국제 호환성 확보 및 성능 검증	해외 선도 통신기업과 공동으로 AI 기반 네트워크 자원관리·트래픽 최적화 기술 개발, 시험망 구축 및 성능 검증 추진	국제 기술협력 기반 확보, 국내 통신기술 경쟁력 강화	국가핵심 기술에 근접
2	6G 통신장비용 초고속 신호처리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차세대 통신장비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 기술 확보	초고속 데이터 처리 및 저전력 통신을 위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통신 핵심부품 자립화, 공급망 안정성 확보	국가핵심 기술 판정 결과 존재

② 보안등급 분류 기준 중 “검토항목” 선택

- 보안등급 분류 과제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검토항목’인 ‘3.국가핵심기술’ 검토항목 선택

검토항목	해당	보안등급 분류 기준 상세 내용
3. 국가핵심기술	☒	· 국가핵심기술과의 연관 가능성이 높음

③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 법적 기준과 정의를 기반으로 보안·민감과제 구분 선택

국가영향 판단 방법	해당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사유
1.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정의에 따라 보안·민감·일반과제를 구분하도록 결정
2. 국가영향 지표	☐	· 국가영향 수준 지표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정의 및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 구분이 가능

3 의결 결과

- (과제1) 향후 국가핵심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유출 시 보안과제 수준은 아니나 국가안보 등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감과제 지정 관리 필요
- (과제2)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가 존재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과제로 의결

구분	연구과제명	보안등급	종합의견	관계법령
1	해외 통신기업과의 공동연구 기반 6G 통신망 최적화 기술 개발	민감	· 국가핵심기술 판정 결과는 없으나 향후 해당 분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 해외 통신기업과의 공동연구 수행에 따라 연구개발정보 공유 및 기술유출 가능성 존재 ·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참여기관의 연구보안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개발정보의 공유 범위 및 접근권한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영제45조 1항2호다
2	6G 통신장비용 초고속 신호처리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보안	·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결과 존재하므로 보안과제로 지정 · 국가핵심기술 관련 보호조치와 함께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영제45조 2항1호

- 상기 내용과 같이 2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의결함

구분	참여자 성함		서명	의결일시
평가위원 확인	1	· 허 00 (위원장)	(서명)	2026.00.00
	2	· 윤 00	(서명)	
	3	· 홍 00	(서명)	
			(서명)	
간사 확인	1	· 정00	(서명)	

4 향후 보안관리 계획

- (과제1) 해당 연구 내용 관련하여 국제교류, 해외출장 등 원내 보고가 필요한 사안을 연구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외 관리는 일반과제와 동일하게 추진
 - 해외 기업과의 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공유 및 기술유출 가능성 고려 필요
 -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보안 신뢰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개발 착수 전 연구개발정보의 공유 범위 및 접근권한을 협의하도록 조치
- (과제2) 보안과제 관련 보안관리 조치를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연구원 교육을 조속히 추진

▶ 국가영향 지표 활용 예시

참고 예시 작성 의도

- 국가영향 수준 지표를 활용한 보안등급 판정 절차 예시
- 지경학적 변화 및 국제공동연구를 고려한 민감과제 지정 사례
-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대신한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소개

1 회의 개요

구분	상세 내용
회의제목	· 『북극권 해양활동 대응기술 개발사업』 기획위원회 보안등급 심의·의결 회의
일시/장소	· 2026.00.00 / 000
회의참석자	· 서00 (총괄 기획위원장), 황00 (분과장1), 민00 (분과장2) 김00 (담당간사)
회의진행 순서	· 보안등급 분류 우선 심의 대상 연구개발과제 식별 · 보안등급 분류 기준 "검토항목" 선택 ·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 위원별 국가영향 수준 지표 관련 의견 개진 · 위원회 의견 점수 종합 및 심의 의결

2 심의 내용

① 보안등급 분류 우선 심의 대상 연구개발과제 식별

- 『북극권 해양활동 대응기술 개발사업』 중 국제공동연구 추진 및 대형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 2건을 보안등급 분류 대상으로 지정
 - (과제1) 사업 내 최대 규모의 연구비가 투입되고 장기간 수행되는 과제이므로 연구성과 및 중요 정보의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 지정 여부를 검토
 - (과제2)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해외 연구기관과 공유·관리하는 과제로, 데이터 관리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안등급 지정 검토

구분	연구과제명 (규모/기간)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보안등급 검토 사유
1	북극항로 변화 대응을 위한 위성기반 해양관측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총 700억 원 / 7년)	· 위성, 해양기상 등 정보 활용한 북극 항로 운항환경 분석 예측하는 기술	· 위성기반 해빙·해양환경 관측 데이터 수집·가공 · 북극항로 위험도 및 운항 가능성 예측 알고리즘 개발 · 국내외 해양관측 데이터 연계·통합 분석 · 항로 운영 지원 플랫폼 시범 구축	· 해운·물류기업의 북극항로 운항계획 수립 지원 · 정부의 해양·물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대형 연구비·장기 연구수행에 따른 중요 연구성과 및 정보 보호 필요
2	북극권 기후·해양환경 통합예측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총 250억 원 / 5년)	· 북극권 기후·해양 환경 변화 데이터를 국제 공동으로 수집·관리·공유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 북극권 기후·해양·생태 데이터 표준화 · 국제 공동연구용 데이터 관리·공유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 연구데이터 플랫폼의 지속적 확장 및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따른 연구 데이터 공유 및 정보 관리 필요

② 보안등급 분류 기준 중 “검토항목” 선택

- 검토항목 중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2. 외교·경제안보 관련성’, ‘6. 산업·경제적 파급력’, ‘7. 연구수행 관리 필요성’을 선택

검토항목	해당	보안등급 분류 기준 상세 내용
2. 외교·경제안보 관련성	☒	· 북극항로 및 해양환경 정보는 국제통상·물류 환경 변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 공급망 안정성 및 미래 자원 확보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가치 존재
6. 산업·경제적 파급력	☒	· 물류·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7. 연구수행 관리 필요성	☒	· 국제공동연구 수행, 연구데이터 공유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수행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관리 필요성이 존재

③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 법적 정의만으로 보안·민감·일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영향 수준 지표를 활용하여 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보안등급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표별 가중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 ②에서 선택한 3개 검토항목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가 상이하다는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항목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
 - 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2. 외교·경제안보 관련성’에는 1.2, ‘6. 산업·경제적 파급력’에는 1.1, ‘7. 연구수행 관리 필요성’에는 1.0의 가중치를 적용

국가영향 판단 방법	해당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사유
1.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정의에 따라 보안·민감·일반 과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2. 국가영향 지표	☒	· 국가영향 수준 지표를 활용하여 위원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한 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안등급을 판정하기로 함

④ 위원별 국가영향 수준 지표 관련 의견 개진

- 서00 위원 의견 개진 예시

1. 보안등급 분류 대상 과제명		
세부사업명	· 북극권 해양활동 대응기술 개발사업	
과제명(RFP)	· (과제1) 북극항로 변화 대응을 위한 위성기반 해양관측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2. 국가영향 수준 지표 검토		
검토항목	검토정보	영향수준
2. 외교·경제안보 관련성	RFP 최종목표 중 공급망 안전성 및 미래 자원 확보 필요성 확인	4
6. 산업·경제적 파급력	과제 추진 기대효과 중 연관 산업 현황 참고	4
7. 연구수행 관리 필요성	기획보고서 중 연구수행 체계, 연구산출물 형태	4
평균점수		4

3. 위원별 보안등급 선택

보안과제	국가안보 위한 별도 관리 필요 → 강력한 통제 및 비공개 관리	☐
민감과제	국가전략에 잠재적 영향 줄 수 있어 추가 관리 필요 → 기관·연구자 단위 관리하되 개방 가능	☒
일반과제	유출 시 국가안보 및 전략 등 영향 제한적 → 성과공개·확산원칙	☐

4. 종합 의견 서술

등급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와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 물류망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임

· 본 과제는 북극항로 운항환경 분석·예측 기술과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연구로, 연구성과가 국가의 해양·물류 정책 및 미래 공급망 전략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외교·경제안보 관련성 및 산업·경제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감과제로 지정

위원회 종합 토론 시 중점 논의가 필요한 사항

· 북극 해양관측 데이터 자체는 공개 가능한 과학정보의 성격을 가지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생성되는 예측정보와 운항 지원정보는 국가의 물류·공급망 전략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데이터 공개 범위에 따라 민감과제 지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5. 제출확인

제출일시	2026 년 월 일
평가위원 이름	서00

⑤ 위원회 심의 점수 종합

<과제1. 북극항로 변화 대응을 위한 위성기반 해양관측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2.외교·경제 안보 관련성		6.산업·경제적 파급력		7.연구수행 관리 필요성		개인점수 (가중평균)	보안등급
	점수	가중치	점수	가중치	점수	가중치		
서00 위원	4	×1.2	4	×1.1	4	×1.0	4	민감
....		×1.2		×1.1		×1.0		민감
황00 위원	4	×1.2	3	×1.1	4	×1.0	3.7	민감
위원회 평균	3.8	×1.2	3.8	×1.1	3.8	×1.0	3.8	민감

<과제2. 북극권 기후·해양환경 통합예측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2.외교·경제 안보 관련성		6.산업·경제적 파급력		7.연구수행 관리 필요성		개인점수 (가중평균)	보안등급
	점수	가중치	점수	가중치	점수	가중치		
서00 위원	3	×1.2	3	×1.1	4	×1.0	3.3	일반
....		×1.2		×1.1		×1.0		일반
황00 위원	3	×1.2	4	×1.1	4	×1.0	3.6	민감
위원회 평균	3	×1.2	3.2	×1.1	4.2	×1.0	3.4	일반

3 의결 결과

- (과제1) 북극항로 정보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공급망·물류 분야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감과제로 지정
- (과제2) 연구목적상 데이터의 공개·공유가 전제되는 과제로 국가안보 또는 경제안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므로 일반과제 분류

구분	연구과제명	보안 등급	종합의견	관계법령
1	북극항로 변화 대응을 위한 위성기반 해양관측 데이터 활용 기술 개발	민감	· 북극항로 정보는 향후 글로벌 물류망 및 공급망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활용 가치가 높음 · 해외 기관과의 관측데이터 공유가 예상되며, 데이터 국외 이전 대상자 및 활용 범위에 따라 우리나라의 물류공급망 관련 전략정보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연구데이터의 공유 범위, 접근권한, 국외이전 절차 및 활용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영제45조 2항3호
2	북극권 기후·해양환경 통합예측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일반	· 다수 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이며 호혜적으로 데이터를 상호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관행이며, 산출물이 주로 논문·특허 등이어서 소유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음 · 연구데이터의 국외 이전·공유 과정에서 활용할 데이터 플랫폼의 종류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 이전에 논의 완료 필요 · 일반과제로 관리하되 데이터 로그 이력을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

- 상기 내용과 같이 2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의결함

구분	참여자 성함		서명	의결일시
평가위원 확인	1	· 서00 (위원장)	(서명)	2026.00.00
	2	· 황00	(서명)	
	3	· 민00	(서명)	
			(서명)	
간사 확인	1	· 김00	(서명)	

4 향후 보안관리 계획

- (과제1) 연구데이터의 공유 범위, 접근권한, 국외이전 절차 및 활용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 공고 단계부터 민감과제임을 명시하고 해당 과제 수행기관에는 민감과제 지정에 따른 보안관리 의무·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안내
- (과제2) 협약 체결 전 참여기관 간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

▶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및 국가영향 지표 복합 활용 예시

참고 예시 작성 의도

-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및 국가영향 지표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사례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보안등급 지정 예시 소개
- 연구개발기관 선정단계에서 보안등급이 구체화된 사례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 추진

1 회의 개요

구분	상세 내용
회의제목	·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관련 보안등급분류위원회
일시/장소	· 2026.00.00 / 000
회의참석자	· 장00 (총괄 기획위원장), 김00 (분과장1), 이00 (분과장2) 박00 (담당간사)
회의진행 순서	· 보안등급 분류 우선 심의 대상 연구개발과제 식별 · 보안등급 분류 기준 "검토항목" 선택 ·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 위원별 국가영향 수준 지표 관련 의견 개진 · 위원회 의견 점수 종합 및 심의 의결

2 심의 내용

① 보안등급 분류 우선 심의 대상 연구개발과제 식별

-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보안등급 지정 없이 공모되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제안으로 연구 내용이 보다 구체화
- 연구개발기관 선정 단계에서 3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보안등급 지정 필요성에 대한 분류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과제의 보안등급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
 - (과제1) AI반도체 기술주권 확보에 직결되는 전략적 가치가 큰 연구
 - (과제2) 과제 예상성과 중 국가핵심기술 포함
 - (과제3) 상용화 단계가 높아 유출 시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보안등급 지정 검토

구분	연구과제명 (규모/기간)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보안등급 검토 사유
1	아날로그 인메모리 컴퓨팅 기반 초저전력 PIM 소자·회로 원천기술 개발 (총 450억 원 / 5년)	인메모리 컴퓨팅 소자· 회로의 동작 원리를 규명 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TOPS/W)과 연산 정밀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신소자 구조의 원천기술을 확보	차세대 비휘발성/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의 전기·물리적 특성과 산포·내구성을 규명하고, 아날로그 연산의 비선형성· 잡음을 보정하는 회로 아키텍처를 설계. 인메모리로 연산 하는 소자·회로-알고리즘 공동 설계(co-design) 방법론 정립 하여, test chip 제작을 통해 원리를 검증	희소 원천기술을 선점하여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	AI 기술주권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하는 연구로 유출 시 국가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안등급 검토 필요

구분	연구과제명 (규모/기간)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보안등급 검토 사유
2	10나노급 이하 LPDDR·HBM 기반 PIM 반도체 양산공정 설계·최적화 기술개발 (총 1,200억 원 / 6년)	10나노급 이하 메모리 공정에서 LPDDR-PIM·HBM-PIM을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설계규칙과 공정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 수율·성능·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양산 실증 기반 구축	첨단 미세공정용 PIM뱅크·연산유닛(PE)과 주변회로의 상세 설계 사양을 도출하고, 셀 특성·공정 변수와 수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최적화. 온디바이스 AI용 LPDDR-PIM 및 대역폭 특화 HBM-PIM의 표준 인터페이스(현재 표준화 진행 중인 LPDDR-PIM 규격 등)와의 정합성, 열·신뢰성 기반 공정 보장, 양산 라인 적용을 위한 테스트·검증 체계를 구축	PIM반도체의 국내 양산 역량과 표준 선점 기반을 확보하여 첨단 메모리 공급망 자립을 실현	국가핵심기술 포함하며 대규모 국가 투자가 이뤄지는 과제로 유출 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
3	상용 PIM 가속기 활용 온디바이스·엣지 AI 응용 서비스 실증 (총 700억 원 / 4년)	PIM 가속기 솔루션을 스마트기기·엣지 서버에 적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LLM) 추론 등 온디바이스·엣지 AI 서비스의 성능·전력 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개발자·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응용 개발환경과 참조 서비스 모델을 마련	상용 GDDR6-AiM 기반 가속기 카드(AiMX) 또는 시제품 PIM 모듈을 활용한 응용 플랫폼을 구성하고, 경량 LLM·영상/음성 인식 등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시제품을 개발. GPU 대비 성능·전력·지연시간(latency) 벤치마크를 측정하고, 개발자용 소프트웨어 스택(SDK)을 공개하여,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실증 사례를 발굴	PIM 기반 AI 서비스의 활용 저변을 넓히고 관련 소프트웨어·서비스 생태계 형성을 촉진	상용화 수준이 높고 과제 규모가 커 유출 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안등급 지정 검토

② 보안등급 분류 기준 중 “검토항목” 선택

- 국가핵심기술, 기술수준 및 희소성, 산업경제적 파급력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

검토항목	해당	보안등급 분류 기준 상세 내용
3. 국가핵심기술	☒	· 2번 과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1번과 3번 또한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	☒	· 반도체 기술수준, 기술의 희소성 등은 기술주권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
6. 산업·경제적 파급력	☒	·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 검토

③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 과제2번은 법적정의·기준만을 활용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과제1번과 3번의 경우 국가영향 지표를 적용한 심의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검토항목별 가중치는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함

국가영향 판단 방법	해당	유출 시 국가영향 수준 판단 방법 결정 사유
1. 법적정의·기준 체크리스트	☒	· 과제2번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법적 정의만으로 국가영향 수준 결정 가능
2. 국가영향 지표	☒	· 과제1번과 3번은 국가영향 수준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 필요

④ 위원별 국가영향 수준 지표 관련 의견 개진

- 장00 위원 의견 개진 예시

1. 보안등급 분류 대상 과제명		
세부사업명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과제명(RFP)	아날로그 인메모리 컴퓨팅 기반 초저전력 PIM 소자·회로 원천기술 개발	
2. 국가영향 수준 지표 검토		
검토항목	검토정보	영향수준
3.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 관련 고시 참고	3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5
6. 산업·경제적 파급력	시장규모, 기술개발 투자비용, 관련산업 규모	4
평균점수		4
3. 위원별 보안등급 선택		
보안과제	국가안보 위한 별도 관리 필요 → 강력한 통제 및 비공개 관리	☐
민감과제	국가전략에 잠재적 영향 줄 수 있어 추가 관리 필요 → 기관·연구자 단위 관리하되 개방 가능	☒
일반과제	유출 시 국가안보 및 전략 등 영향 제한적 → 성과공개·확산원칙	☐
4. 종합 의견 서술		
등급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 항목 5(기술 수준 및 희소성, 5점)와 항목 6(산업·경제적 파급력, 4점)이 보안등급 결정의 핵심 판단요인으로 작용 · 해외에서 재현·대체가 어려운 희소 원천기술로서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주권 확보에 직결되는 전략적 가치가 큼. 다만 본 과제는 소자 물성 규명과 test chip 원리 검증에 중점을 둔 기초·원천연구 단계로, 상용 공정·상세 설계사양이 확정되지 않아 보안과제 정의에는 미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유출 시 국가영향을 고려해 추가 관리가 필요한 민감과제로 심의		
위원회 종합 토론 시 중점 논의가 필요한 사항		
· 향후 소자 사양이 구체화되어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에 근접하거나 양산 설계로 진입할 경우, 단계평가 시 보안과제 다시 분류 검토 필요		
5. 제출확인		
제출일시	2026 년 월 일	
평가위원 이름	장00	

⑤ 위원회 심의 점수 종합

<과제1. 아날로그 인메모리 컴퓨팅 기반 초저전력 PIM 소자·회로 원천기술 개발>

	3. 국가핵심기술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	6. 산업·경제적 파급력	개인점수(평균)	보안등급
장00 위원	3	4	4	4	민감
....					민감
이00 위원	4	3	4	3.7	민감
위원회 평균	3.8	3.8	3.8	3.8	민감

<과제3. 상용 PIM 가속기 활용 온디바이스·엣지 AI 응용 서비스 실증>

	3. 국가핵심기술	5. 기술 수준 및 희소성	6. 산업·경제적 파급력	개인점수(평균)	보안등급
장00 위원	3	3	4	3.3	일반
....					일반
이00 위원	3	4	4	3.7	민감
위원회 평균	3	3.2	4.2	3.4	일반

3 의결 결과

- (과제1) 기술희소성, 장기적인 기술주권 확보 등을 고려하여 민감과제로 지정
- (과제2)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과제로 보안과제 지정
- (과제3) 유출 시에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일반과제로 분류

구분	연구과제명	보안 등급	종합의견	관계법령
1	아날로그 인메모리 컴퓨팅 기반 초저전력 PIM 소자·회로 원천기술 개발	민감	· 해외에서 재현·대체가 어려운 희소 원천기술로서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주권 확보에 직결되는 전략적 가치가 크나 아직 상용화 관련 설계사양이 확정되지 않아 보안과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	영제45조 2항2호
2	10나노급 이하 LPDDR·HBM 기반 PIM 반도체 양산공정 설계·최적화 기술개발	보안	· 10나노급 이하 첨단 D램 공정의 상세 설계사양·수율 최적화 데이터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 첨단전략기술 수준에 해당하며, 유출 시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됨	영제45조 1항2호다
3	상용 PIM 가속기 활용 온디바이스·엣지 AI 응용 서비스 실증	일반	· 본 과제는 이미 상용화된 PIM 가속기와 공개 응용기술을 활용하는 응용·실증연구로, 새로운 원천기술이나 상세 공정사양을 창출하지 않으며 SDK·참조코드 공개와 서비스 확산을 지향함. 따라서 검토항목 일부에 형식적으로 해당 하더라도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 관리가 필요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아 일반과제로 심의 · 다만 실증 과정에서 특정 응용이 국방·안보 분야로 확장 되거나 활용 데이터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게 될 경우 다시 분류 검토 필요.	-

- 상기 내용과 같이 3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의결

구분	참여자 성함		서명	의결일시
평가위원 확인	1	· 장00 (위원장)	(서명)	2026.00.00
	2	· 김00	(서명)	
	3	· 이00	(서명)	
			(서명)	
간사 확인	1	· 박00	(서명)	

4 향후 보안관리 계획

- (과제1) 민감과제로 분류하며 관련 연구자에게 국외활동 시 보고 절차 내용 안내
 - 향후 소자 사양이 구체화되어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에 근접하거나 양산 설계로 진입할 경우, 단계 평가 시 보안과제 다시 분류 검토 필요
- (과제2) 보안과제로 보호하되 표준화 국제협력, 외부 협업기관과 협력 시 적절한 보호 범위 및 공개 범위 설정이 중요
 - 표준화 진행 중인 LPDDR-PIM 규격 대응 과정에서 국제 표준화 협력과 상세 설계정보 보호 간 균형 필요
 - 양산 파트너·장비사 등 외부 협력기관의 상세 공정정보 접근 범위 관리방안 집중 논의 필요
- (과제3) 일반적인 보안관리 추진하며 상용화 진행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리 보호 강화

1 보안등급 판단 관련 Q&A

Q1-1. 외국인·외국기관의 연구과제 참여 또는 외국과 국제협력 시 보안·민감과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 국제협력 자체는 위험요인이 아니지만 과제의 협력구조가 복잡해지며 중요 정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제협력은 보안등급 판정 시 고려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제협력 여부만이 아닌 연구 대상 보호가치, 국가안보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지정합니다.
- 그 외 보안등급과 관계없이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협력기관 및 참여 연구자의 적정성, 역할 및 정보 접근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검토해야 합니다.

Q1-2. 과제 선정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수준이 낮으면 보안·민감 등급으로 지정해야 하나요?

- 등급 지정은 과제 성격(목적, 활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연구환경에 대한 평가는 부차적 판단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1-3. 기초분야도 전략기술 등 중요기술이면 보안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하나요?

- 기초 분야 과제라도 유출되었을 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보안·민감과제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기술성숙도가 높은 단계(TRL 4단계 이상)부터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Q1-4. 상용화 이전 연구이며 시장이 없어 보안·민감과제 후보에서 제외하면 되나요?

- 초창기 기술이라도 향후 산업 지배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다각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1-5. 국가전략기술이므로 보안·민감과제로 구분해야 하나요?

-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반드시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은 기술의 중요성과 국가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보안등급 분류 시 우선 검토가 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1-6.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 수준이 아니거나 추격 상태이므로 보안·민감 등급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보안등급은 기술 수준뿐 아니라 보호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고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추격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도,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7. 안보의 범위를 군사 분야로 한정하여 보안·민감 과제 후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또는 국내 산업 구조 안정성 유지 또한 안보의 중요 요소입니다.

Q1-8. 군사 목적 연구가 아니고 군 및 방위산업체와의 계약도 없어 보안·민감 등급 지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민간 기술도 군사 시스템에 결합 및 확장 가능하며 활용 주체가 군이 아니어도 군사·안보적 활용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 대상입니다.

Q1-9. 해외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므로 보안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보안등급 분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해외에 존재하더라도 국내 자립, 대체 가능성이 낮으면 보안·민감 등급 지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각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보안등급 지정 시기, 절차, 방법 Q&A

Q2-1. 보안등급분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 연구개발과제 기획 또는 평가위원회 참석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으로 구성하며,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보안등급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2-2. 보안등급을 다시 분류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 보안등급 다시 분류가 가능한 경우는 당초 보안등급 지정 당시 대비 '연구환경 및 연구방향' 관련 변화가 존재할 때입니다. 구체적 예시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안등급 다시 분류 가능한 사례(예시)>

구분	사례	다시 분류 판단
연구성과 도출 방향 변경	연구결과가 예상보다 고도화·구체화된 경우	기초·탐색 연구로 시작했으나, 최종 결과물에서 구현 가능한 설계, 알고리즘, 핵심 파라미터가 도출되어 군사·안보·통제 시스템에 직접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상향) 일반 → 민감 민감 → 보안
	연구성과의 활용 맥락이 변경된 경우	연구결과가 특정 산업·공공 목적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평가 결과 국방·치안·사이버 안보 등 국가안보 관련 분야와의 직접적 활용 시나리오가 확인된 경우 (상향) 일반 → 민감
		민감·보안으로 관리되었으나, 최종 성과가 개념 검증 수준에 그치고, 실질적 전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하향) 보안 → 민감/일반 민감 → 일반
	연구결과가 당초 목표 대비 제한적으로 도출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되어 수행되었으나, 기술적 난이도 미달, 외부 공개 시에도 위험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경우 (하향) 보안 → 민감 민감 → 일반
연구환경 변화	국제정세 변화	일반과제였으나 해당 과제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어 보호 필요성 발생 (상향) 일반 → 민감
	법·제도 변화	국가핵심기술 등 관련 고시로 지정된 보호 범위가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보안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 ↔ 민감 민감 ↔ 보안
	국가 산업 전략 변화	산업 기여 가능성이 큰 민감과제로 인정되었으나 강력한 대체 연구 및 기술 출현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낮아짐 (하향) 민감 → 일반

Q2-3. 중앙행정기관이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에 통보한 후 의견을 받은 경우, 그 의견은 언제 반영하나요?

· 중앙행정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보안등급 분류 의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류 시급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2-4. 중앙행정기관이 보안등급 자가점검서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연구자)에게 의견을 받은 경우 반영해야 하나요? 반영한다면 언제 해야 하나요?

·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이 제시한 보안등급 분류 의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류 시급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영 시점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2-5. 신규 기획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모두 보안등급 분류를 검토해야 하나요?

· 모든 과제에 대해 분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며, 보안·민감과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 과제를 검토합니다. 후보 과제는 필요시 IV장의 「등급분류 우선 검토 대상 식별 및 검토 내용 예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안등급별 보안관리 조치 Q&A

Q3-1.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승인 요청, 보고 및 통보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하나요?

· 보고 및 통보는 사후적 관리를 목적으로 현황을 파악 및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다만, 승인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도 함께 보안관리 조치의 타당성을 심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외국 연구개발 기관의 보안과제 참여 타당성 등)

Q3-2. 민감과제 참여자에게도 보안수당을 지급하나요?

· 보안·민감과제는 보안수당 계상·집행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연구기관 방침 등에 따라 보안·민감과제 연구자, 관련 근접지원인력에게도 배분이 가능합니다.

Q3-3. 민감과제 정보도 보안과제처럼 NTIS에서 비공개 처리되나요?

· 민감과제는 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안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감과제는 일반과제와 동일하게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보안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과제정보·연구자·연구비·연구성과 등 정보 비공개 가능
· 다만, 민감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NTIS)에서 최대 3년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Q3-4. 민감과제 연구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실태점검 대상인가요?

· 민감과제도 보안관리 조치를 수행하므로 실태점검 대상입니다.

Q3-5. 과제 수행 및 종료 시 보안등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안관리 조치 등을 그 이전 과제 관리 사항에도 적용해야 하나요?

· 보안등급이 변경된 시점부터 새로운 보안관리 조치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처 판단에 따라 과거 내용 중 현재 보안 관리에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관리 조치를 적용합니다.

붙임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서(연구자용)

- ※ (작성시기) ① 연구개발기관 선정 단계 및 협약시기, ② 보안등급 다시 분류를 원하는 경우, ③ 과제 최종평가 시기
- ※ (활용방법) 본 점검서는 보안등급 분류 또는 다시 분류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출 절차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름
- ※ (유의) 보안등급 분류는 연구개발과제 유출 시 국가안보, 외교, 경제·산업 등에 미치는 국가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개별 기업 또는 개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님에 유의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보안·민감과제 후보 검토 기준 (연구자용)	예	아니오	불확실
1	이 연구가 군사·방위력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까?	☐	☐	☐
2	이 연구가 해외에서 기술이전이 제한되거나 거부되어 국산화가 필요한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	☐	☐
3	이 연구에 특정 국가·기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
4	연구 내용 유출 시 특정 산업(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
5	연구 내용 유출 시 국제 협력, 외교, 통상 협상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
6	이 연구 분야의 기술패권 경쟁이 첨예하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	☐
7	이 연구 내용이 '첨단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8	이 연구 관련 기술이 관계 법령에 의해 별도로 보호·육성되고 있습니까?	☐	☐	☐
9	이 연구가 사회적·윤리적 영향이 크거나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연구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	☐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민감과제 ☐ 일반과제

- ※ 상기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또는 불확실한 내용의 경우, 보안·민감과제 후보로 검토될 수 있음
- ※ 연구자가 불확실로 체크한 사항은 기관 내 연구보안 담당자(또는 연구보안심의위원회) 등이 검토
- ※ 본 체크리스트는 참고자료이며, 보안등급은 보안등급분류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이 최종 결정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붙임3 IRIS 시스템 보안등급 관리 기능 안내

개요

- (배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안등급에 '민감과제'가 추가됨에 따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관련 관리 기능을 구현('26.8.18. 적용)
- (적용 범위) PMS의 공고 관리·과제 접수 사전검토, R&D업무포털의 (신청용·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및 협약 변경

※ IRIS를 이용하는 기관은 IRIS의 협약 변경을 통해 통보 절차 같음 가능

<IRIS 보안등급 관리 기능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안등급	일반, 보안	일반, 민감, 보안
보안등급에 따른 과제정보 공개 여부(NTIS)	(일반) 과제정보 공개 (보안) 과제정보 비공개	(일반) 과제정보 공개 (민감) 과제정보 공개·비공개 중 선택 (보안) 과제정보 비공개

※ 본 안내의 화면은 '26.8. 기준이며, 시스템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공고 관리(PMS)

- '공고 관리 > 공모분야(RFP) 설정'의 '보안등급 설정'에서 공모과제 RFP별로 적용할 보안등급을 지정
- 일반과제·민감과제·보안과제 중 선택
- 설정한 보안등급은 연구자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기본값으로 표출되며, 연구자가 사유를 입력한 뒤 변경 가능

※ 게시 이후 공고설정 변경 시 공고정보 연계를 위해 'NTIS재전송'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세부공고별 접수 일정

공고 회차	사업공고 명	접수계획서 유형	접수시작일	접수시작시간	접수종료일	접수종료시간	연장공고 여부	공고 게시	NTIS 재전송
1	입력 항목 테스트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2026-06-10	09:00:00	2026-12-31	18:00:00	아니오	게시	재전송
2	입력 항목 테스트(개념)	개념계획서	2026-06-10	09:00:00	2026-12-31	18:00:00	아니오	게시	재전송

▶ 공모분야(RFP) 설정 [전체 2건]

과제개발 유형	기술료 징수 제외기간 구분	연구기간 구성	연구기간 설정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성과초회권한	과제접수 형태	대외 비공개 여부	과제명 고정 여부	접수대상 지정 사유 구분	기술분류별 제약설정구분	보안등급 설정	국제공동연구 공동기관형 여부	제약설정	모의과제	변경이력
신제품	해당사항없음	단계없는	자율구성	해당	해당없음	개별과제	아니오	국/영문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선택 -	아니오	해당없음	모의과제	
당사항	해당사항없음	단계없는	자율구성	통합	총괄연구	개별과제	아니오	국/영문 !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반과제 민감과제 보안과제	아니오	해당없음	모의과제	

표준계약규정 | 접수가능대상 | 기간및사업비 | 기관별역할 | 동시수행과제수제한 | 추가항목 | 선행접수

▶ 공고 표준 계약 규정 코드 [전체 30건]

적용 여부	규정 명	적용 규정 코드	사용자 지정값(비율)	적용값 기본 구분	적용 과제 진행 구분	적용값 단위 구분	적용 시작값	적용 종료값
☐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다중선택			0.000	0.0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대기업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연구비현금합		비율	0.000	0.5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견기업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연구비현금합		비율	0.000	0.7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연구비현금합		비율	0.000	0.750

[그림 6] 공모시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설정

▶ 과제 접수 사전검토(PMS)

- '과제 접수 사전검토 > 보안등급변경사유' 탭에서, 공고에서 설정한 보안등급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선택한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변경된 보안등급과 그 사유를 확인

☆ 과제 접수 사전검토

전문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년도 2026년 사업분류(검색용)

대상 과제 [전체 60건] 조회 건수 50건 ☒ 과제다중선택

☐	공고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RFP명	과제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접수유형
☐	수평기관 MIS 테스트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수평기관 MIS #1		(한국시업)총괄연구	(한국시업)총괄연구	RS-2025-BJ000001	수평기관 MIS 테스트 과제#1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	접수팀 테스트 공고_202606	☒ 접수팀 테스트 사업_202606	접수팀 테스트 사업_202606	배제항기위원회	(일반)연구개발과제	RS-2026-02780057	배제항기위원회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한국과학기술
☐	연구개발비 비율 TEST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	[RP-2025-011] (테스트) 25.02.1	(한국시업)연구개발	RS-2026-02780015	[RP-2025-011] (테스트) 25.02.18 RFP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나날에스엠어
☐	입력 항목 테스트	과제항목별 사업	과제항목별 사업	입력 항목 테스트	(일반)연구개발과제	RS-2026-02779996	서식총량제-접계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나날에스엠어
☐	접수팀 테스트 공고_202606	☒ 접수팀 테스트 사업_202606	접수팀 테스트 사업_202606	협약	(일반)연구개발과제	RS-2026-02779965	과제조정 테스트3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한국과학기술

기관 ☒ 자격검토

기관역할 기관명 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문수 ☒

※ 자격검토 버튼을 누르면 현 시험 기준의 적합성 검토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신청자격적합성 우대감점 재무정보 기관신용정보 자별성검토 주요 연구수행 실적 **보안등급변경사유**

▶ 보안등급 변경사유 ※ 공고에서 설정한 보안등급의 변경 시 사유를 출력합니다.

보안등급 (공고 설정)	변경 보안등급 (연구자 선택)	변경 사유
일반과제	민감과제	테스트11

[그림 7] 과제 접수 사전검토시 보안등급 확인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R&D업무포털)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기본정보' 탭의 '과제보안' 항목에서 전문기관이 설정한 보안등급을 확인
 - 최초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보안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 설정 사유를 입력하고 변경 가능
 - ※ 보안등급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업·공고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

(신청용)연구개발계획서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도움말

과제 정보 ☒ 전체 1건

접수취소 최종확인 **제출** 기관담당자승인 기관담당자반려 목록

(책임자)접수 진행중-접수종료일 : 2028-12-28 00:00:00 / (기관담당자)접수 진행중-접수종료일 : 2028-12-28 00:00:00

전문기관 공고설정 최종변경 일시 : 2026-06-15 13:49:49 ☒ 변경사유

- ❗ [최종확인] : [최종확인]버튼 클릭 시 데이터 검증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중에도 계획서 중간점검이 가능합니다.
- ❗ [제출] : 접수종료일 이전에 [제출]버튼 클릭한 과제에 제출완료된 과제로 인정되며, [제출]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만 가능합니다.
- ❗ [제출취소] : 접수종료일시(책임자제출) 전까지,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는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회수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담당자 승인 이후 제출취소한 연구개발계획서는 재제출 후 반드시 기관담당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취소], [기관담당자승인], [기관담당자반려] 버튼은 과제 정보 우측 도움말 아이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명	과제 구분	연구개발 기관	연구 책임자	과제 상태	계획서 상태	기본 정보	과제 요약	연구 기관	지원 기관	국제 협력	연구 개발비	연구 장비	성과 지표	첨부 파일	최종 확인
테스트	☒	(일반)연구 한국과학기술	이도훈	신청/접수	계획서 작	☒	☒	☒	☒	☒	☒	☒	☒	☒	☒

(RS-2026-02779733) 테스트 > 기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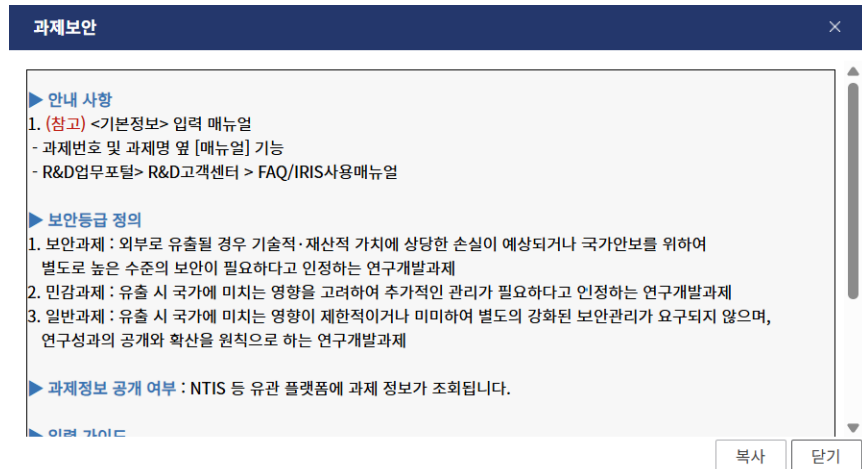
과제정보 불러오기 ☒ 초기화 **입력가이드** 다운로드

• 과제보안 ☒

* 보안등급	☒ 보안과제 ☐ 민감과제 ☐ 일반과제
* 보안등급 설정 사유	
* 과제정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보안-민감과제해제년월	-

* 보안-민감과제해제년월은 당해년도에 과제 종료일 이후로 입력 하되 당해년도 과제 종료기간 +30년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공개과제로 입력을 원하는 경우 보안-민감과제 해제년월을 999912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8]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기본정보' 탭의 '과제보안' 항목



[그림 9] 보안등급 정의 안내 도움말

- 과제정보 공개 여부는 보안등급에 따라 적용
 - (보안과제) 비공개로 고정, (일반과제) 공개로 고정
 - (민감과제) 공개 여부를 연구자가 선택하며, 공개를 선택한 경우 NTIS 등 유관 플랫폼에서 과제정보 조회 가능
- ※ '비공개' 설정 시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업·광고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

• 과제보안

* 보안등급	☐ 보안과제 ☒ 민감과제 ☐ 일반과제
* 보안등급 설정 사유	
* 과제정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보안·민감과제해제년월	

* 보안·민감과제해제년월은 당해년도와 과제 종료일 이후로 입력 하되 당해년도 과제 종료기간 +30년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공개과제로 입력을 원하는 경우 보안·민감과제 해제년월을 999912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0] 민감과제 선택 시 과제정보 공개 여부 선택

- 민감·보안과제에서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알림과 함께 '연구개발비' 탭이 임시저장 상태로 전환
 - 보안수당은 민감·보안과제에만 계상할 수 있는 비목
- ※ 일반과제로 변경 시 기 계상된 보안수당은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해당 금액을 다른 세목으로 변경 필요하며, 등급 변경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 탭 저장에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및 협약 변경(R&D업무포털)**

- 변경항목 선택 시 '연구개발내용(과제보안) 변경' 항목을 선택하면 일반·민감·보안과제로의 보안 등급 변경 가능

협약변경신청

과제수행 > 협약변경 > (승인통보)협약변경신청

도움말

협약 변경 PDF재생성 정산진행확인

삭제 제출 기관담당자승인 기관담당자반려 회수 목록

과제명	과제 구분	연구개발 기관	연구 책임자	변경 구분	과제 상태	신청 상태	신청 결과	변경 신청	기본 정보	과제 요약	연구 기관	지원 기관	국제 협력	연구 개발비	연구 장비	성과지표 (연차)	추가 항목	첨부 파일	최종 확인
변경항목선택																			
·변경항목 ?																			
대분류	분류	소분류		비고															
연구개발목표내용	연구개발내용	상호협의/승인	☐ 연구개발내용(과제명) 변경																
		상호협의/승인	☒ 연구개발내용(과제보안) 변경																
		통보	☐ 연구개발내용(기술분류) 변경																
		통보	☐ 연구개발내용(키워드) 변경																
		통보	☐ 연구개발내용(기술분류,일반분류) 변경																

[그림 11] 협약변경신청의 변경항목

- **협약 변경 시 '기본정보' 탭에** 표출되는 보안등급은 현재 해당 과제에 설정되어 있는 보안등급
※ 보안등급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업·공고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고, '도움말'에서 등급별 정의를 확인

과제보안 ?

변경항목

☒ 연구개발내용(과제보안) 변경(상호협의/승인)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민감과제 ☐ 보안과제
* 보안등급 설정 사유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안등급 변경
* 과제정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보안·민감과제 해제년월	2029-12

* 보안과제해제년월은 당해연도의 과제 종료일 이후로 입력 하되 당해연도 과제 종료기간 +30년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공개과제로 입력을 원하는 경우 보안과제 해제년월을 999912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2] (협약용) 기본정보 탭의 과제보안 항목

- 공고 설정과 다른 보안등급을 선택하는 경우 안내 팝업이 표출되며, 민감·보안과제에서 일반과제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탭이 임시저장 상태로 전환

추가정보 ?

변경항목

☐ 연구개발내용(기술분류-일반분류) 변경(통보)

R&D공통

* 연구개발 단계

기초

* 연구개발과제성격

연구개발

과제보안 ?

변경항목

☒ 연구개발내용(과제보안) 변경(상호협약/승인)

* 보안등급

☒ 일반과제
☐ 민감과제

* 보안등급 설정 사유

* 과제정보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 보안·민감과제 해제년월

-

확인

?

※ 보안등급이 일반과제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탭이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됩니다.

입력하신 보안수당은 삭제되어 연구개발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역을 저장 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 보안과제해제년월은 당해년도의 과제 종료일 이후로 입력 하되 당해년도 과제 종료기간 +30년까지 입력가능합니다.

비공개과제로 입력을 원하는 경우 보안과제 해제년월을 999912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3] 협약 변경 시 보안등급 변경 화면